「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2022. 5. 31.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

1. 개정이유

전파환경조사시 현재 건수 산정에 측정시간이 정해지지 않아 현장에서 민원인이 연속측정 요구(새벽, 야간 또는 12시간, 24시간 등)를 할 경우 1일 근무시간(8시간)을 초과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민원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건수 산정에 측정시간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파환경조사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른 1일(8시간)의 근무시간 중 현장측정을 위한 준비시간 2시간(이동, 설치 등)을 제외하고 1건당 연속측정시간을 최대 6시간으로 정하여 건수 산정 근거를 구체화(안 제5조제1호)

나. 제5조제1호 개정에 따른 전파환경조사 신청서 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파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중앙전파관리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국립전파연구원장 고시 제2022-11호

전파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7-8호, 2017.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3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건"을 "1건으로 하고 1건에 대한 연속측정시간은 최대 6시간"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청인이 6시간을 초과하여 연속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6시간 단위로 구분하여 측정 건수를 산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신청사항 이하를 다음과 같이 한다.

<table>
<tr><td rowspan="5">신 청
사 항</td><td>조 사 장 소</td><td colspan="3"></td></tr>
<tr><td>지 점 수</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4">지점별
주파수대역</td><td>지점명</td><td>주파수대역</td><td>(연속) 측정 시간</td></tr>
<tr><td></td><td>[ ] 20Hz ~ 30MHz, [ ] 30MHz ~ 1GHz,
[ ] 1 GHz ~ 20GHz, [ ] 20GHz ~ 40GHz
[ ] 40GHz ~ 300GHz</td><td>____시간 (건)
※ 1건 측정은 최대 6시간임</td></tr>
<tr><td></td><td>[ ] 20Hz ~ 30MHz, [ ] 30MHz ~ 1GHz,
[ ] 1 GHz ~ 20GHz, [ ] 20GHz ~ 40GHz
[ ] 40GHz ~ 300GHz</td><td>____시간 (건)
※ 1건 측정은 최대 6시간임</td></tr>
<tr><td></td><td>[ ] 20Hz ~ 30MHz, [ ] 30MHz ~ 1GHz,
[ ] 1 GHz ~ 20GHz, [ ] 20GHz ~ 40GHz
[ ] 40GHz ~ 300GHz</td><td>____시간 (건)
※ 1건 측정은 최대 6시간임</td></tr>
</table>

	참 고 사 항	
	용 도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파환경 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전파관리소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건당 203,000원 (1개 지점에서 주파수 대역별로 6시간 단위로 1회 측정하는 것을 1건으로 함)	수 수 료 산 정 (지점별 주파수대역 선택 수 × 측정시간 건 수 × 203,000원)의 각 지점별 합계 ※ 수수료 납부 시 접수 완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전파환경 측정의 단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파환경측정 신청의 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파환경 조사는 다음 각목의 주파수대역 구분에 따라 신청인이 지정한 1개 지점에서 주파수 대역별로 1회 측정하는 것을 <u>1건</u>으로 한다. 가.~마. (생 략) 2.~4. (생 략)	제5조(전파환경 측정의 단위) ---------- 1. ---------- ---------- <u>1건으로 하고 1건에 대한 연속측정시간은 최대 6시간</u>-----. <u>다만, 신청인이 6시간을 초과하여 연속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6시간 단위로 구분하여 측정 건수를 산정한다.</u> 가.~마. (현행과 같음) 2.~4.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전파환경조사 신청서 ■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12. .> (앞 쪽) **전파환경 조사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25일 신청자: 상호명 / 전화번호 / 성명(기업:대표자)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우) / 업무담당자: 성명 / 전화 / E-mail / Fax 신청사항: 조사장소 / 지점수 / 지점별 주파수대역 지점명 / 주파수대역 [ ] 20 Hz ~ 30 MHz, [ ] 30 MHz ~ 1 GHz, [ ] 1 GHz ~ 20 GHz, [ ] 20 GHz ~ 40 GHz, [ ] 40 GHz ~ 300 GHz [ ] 20 Hz ~ 30 MHz, [ ] 30 MHz ~ 1 GHz, [ ] 1 GHz ~ 20 GHz, [ ] 20 GHz ~ 40 GHz, [ ] 40 GHz ~ 300 GHz [ ] 20 Hz ~ 30 MHz, [ ] 30 MHz ~ 1 GHz, [ ] 1 GHz ~ 20 GHz, [ ] 20 GHz ~ 40 GHz, [ ] 40 GHz ~ 300 GHz [ ] 20 Hz ~ 30 MHz, [ ] 30 MHz ~ 1 GHz, [ ] 1 GHz ~ 20 GHz, [ ] 20 GHz ~ 40 GHz, [ ] 40 GHz ~ 300 GHz 참고사항 / 용도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파환경 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전파관리소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산정: 건당 203,000원 (1개 지점에서 주파수 대역별로 1회 측정하는 것을 1건으로 함) / (지점별 주파수대역 선택 수 × 203,000원)의 각 지점별 합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쪽(생 략)	[별지 제1호서식] 전파환경조사 신청서 ■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2. 00. 00.> (앞 쪽) **전파환경 조사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25일 신청자: 상호명 / 전화번호 / 성명(기업:대표자)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우) / 업무담당자: 성명 / 전화 / E-mail / Fax 신청사항: 조사장소 / 지점수 / 지점별 주파수대역 지점명 / 주파수대역 / (연속)측정시간 [ ]20Hz~30MHz, [ ]30MHz~1GHz, [ ]1GHz~20GHz, [ ]20GHz~40GHz, [ ]40GHz~300GHz / ____시간(건) ※1건 측정은 최대 6시간임 [ ]20Hz~30MHz, [ ]30MHz~1GHz, [ ]1GHz~20GHz, [ ]20GHz~40GHz, [ ]40GHz~300GHz / ____시간(건) ※1건 측정은 최대 6시간임 [ ]20Hz~30MHz, [ ]30MHz~1GHz, [ ]1GHz~20GHz, [ ]20GHz~40GHz, [ ]40GHz~300GHz / ____시간(건) ※1건 측정은 최대 6시간임 참고사항 / 용도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파환경 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전파관리소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산정: 건당 203,000원 (1개 지점에서 주파수 대역별로 6시간 단위로 1회 측정하는 것을 1건으로 함) / (지점별 주파수대역 선택 수×측정시간 건 수×203,000원)의 각 지점별 합계 ※ 수수료 납부 시 접수 환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뒷쪽(현행과 같음)